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59 발의연월일: 2020. 9. 29.

발 의 자: 권칠승·서동용·윤미향

고영인 • 박성준 • 이용빈

김주영 · 윤건영 · 박홍근

김정호 · 이형석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면허가 취 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재교부를 허용함에 따라 위법행위 예방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고, 특히, 재교부받은 사람이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,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,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65조 및 안 제6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중 "제1항제2호에"를 "제1항제2호·제2호의2에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2.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(같은 항제2호의2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은 제외한다)에는 면허를 재교부할수 없다.

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해당하면"을 "해당하면(제65조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료인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적용례) 제65조제1항제2호의2 및

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(면허 취소와 재교부) ①	제65조(면허 취소와 재교부) ①
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	
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	
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2의2.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
	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
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	<u>는 경우</u>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	②
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	
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	
거나 개전(改悛)의 정이 뚜렷하	
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	
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3호	
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	
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, <u>제</u>	<u>제</u>
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	<u>1항제2호 · 제2호의2에</u>
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	
년 이내, 제1항제4호ㆍ제6호 또	

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 부하지 못한다.

<u><신 설></u>

제66조(자격정지 등) ① 보건복지 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.

1. ~ 10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	
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	
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1항에	
따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	
경우(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	
면허 취소 처분은 제외한다)에	
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.	
제66조(자격정지 등) ①	
해당하면(제65조	
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	
우는 제외한다)	
 1. ~ 10. (현행과 같음)	
② ~ ⑥ (현행과 같음)	